

#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홍식

###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김종필 의원 등 8인

####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3년 6월 30일

나. 회부일자 : 2023년 7월 5일

#### 3. 제안이유

○ 본 조례는 「도로법」에 따라 지방도에 다른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바, 교통량이 적은 소규모 시설에 맞게 일부 변속차로 최소 확보 길이를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별표5]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개정
  - 2. 가. 7) 공장·숙박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의 경우 "20대 이하"를 "5대 이하"와 "6대 이상 20대 이하"로 세분하여 완화된 기준을 신설
- 부정확한 법령명을 개정(안 제3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안 제5조, 제 15조)

#### 5.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이 아닌 지역의 경우로써, 지방도와 공장·숙박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을 연결하는 경우에.
- 주차 대수가 "20대 이하"를 "6대 이상 20대 이하"와 "5대 이하"로 세분하여, "6대 이상 20대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기준을 유지하되, "5대 이하"인 경우에는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 반지름: 12m)"로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 「도로법」 제52조제3항에 따르면 충청북도가 도로관리청이 되는 지방 도의 경우, 그 도로와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때에는 그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충청북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률에 위반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임.
- 주차 대수가 5대 이하인 소규모 공장 등 시설에서 지방도와 연결하는 경우 변속 차로의 최소길이 기준을 완화하여 일부 영세한 소기업의 고충을 해소하여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 공장·숙박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시설로 완화된 기준에 따라 변속 차로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시설과 연결 도로의 진출입시 사고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변속 차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는 안전시설 등의 설치하거나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 는 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 개정대상 기준의 타시도 현황 >

1. 현행과 같은 시도 :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 설	주차 대수 또는 가구수	감속부의 길이		가속부의 길이	
		감속차로	테이퍼	가속차로	테이퍼
공장 · 숙박시설 · 업무시설 · 근린생활	20대 이하	20	10	40	20
시설 및 기타시설		(15)	(10)	(30)	(20)

2. 개정안과 같은 시도 : 경기(19.10.31 시행). 전북(15.10.29 시행)

시 설	주차 대수 또는 가구수	감속부의 길이		가속부의 길이		
		감속차로	테이퍼	가속차로	테이퍼	
공장·숙박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 시설 및 기타시설	5대 이하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 반지름: 12m)				
	6대 이상 20대 이하	20	10	40	20	
		(15)	(10)	(30)	(20)	

○ 그 밖에 조문 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안 예고('23. 7. 5.~'23. 7. 11.)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함.

#### 6. 검토의견

-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도로법」의 위임에 따라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기준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률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은 일정한 경우 주차 대수가 5대 이하인 경우 변속 차로의 최소 길이 기준을 완화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일부 영세한 소기업의 고 충을 해소할 수 있는 반면, 해당 시설과 연결 도로 진출입시 사고 위험 성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변속 차로 설치시 교 통안전을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